

청주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684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가. B

나. C

소송대리인 B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조용주

변 론 종 결 2022. 7. 8.(피고 B, C에 대하여) 2022. 8. 26.(피고 D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피고 B, C는 망 A(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062,984원 및 그 중 각 5,042,738원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2. 4. 2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망 A와 피고 D 사이에 2020. 12. 24.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10,125,969원 및 그 중 10,085,479원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2. 8. 26.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 C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 D에 대하여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D는 원고에게 10,125,969원과 그 중 10,085,479원에 대하여 2021. 9.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0%의,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사고, 대위변제 등

○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10.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E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망인이 2021. 2. 3.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E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1. 9. 8. 망인의 대출원리금 채무 10,085,4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는 구상금채권보전을 위해 법적절차비용 40,490원을 지출하여, 구상금 채권은 10,125,969원(= 10,085,479원 + 40,490원)이 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10%이다.

○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3. 30.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B, C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피고 B, C는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2022. 7. 21.자 2022느단5093 결정으로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나. 재산처분 등

○ 망인은 피고 D에게 2020.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6. 1. 채무자를 망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20. 12. 30. 채무자를 피고 D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2021. 6. 30.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3,000,000원이었다. 한편 2020. 12. 24.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3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G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분명한 사실(소송수계)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다만 한정승인신고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062,984원(= 구상금 10,125,969원 × 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각 5,042,738원1) (= 구상금 중 법적절차비용을 제외한 10,085,479원 × 1/2)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분명한 2022. 4. 2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9. 8.(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에 성립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2. 24.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망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2. 3.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처분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은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 D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망인이 자신에게 망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해서 운영해보라고 권하기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한 것이고, 망인이 부자인줄로 알았다면서, 자신은 망인의 채무초과 상태나 위 매매로 인하여 망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위 매매의 경위가 피고 D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D가 당시 망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깨뜨리고 피고 D가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그렇다면,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2020. 12. 24.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일부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서 반환을 구하는 가액만큼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경우는 아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10,125,969원 및 그 중 10,085,479원에 대하여 2021. 9.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마.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후인 2020. 12. 30.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망인에서 피고 D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망인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가 피고 D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안은 사해행위 전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경우가 아니고, 사해행위 전에 마쳐진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현재까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채무자가 변경되었을 뿐이다), 근저당권이 붙은 채로 원물을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더라도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명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안은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명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 일부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전부 청구(大)는 일부 청구(小)를 포함하나, 일부 청구(小)는 전부 청구(大)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원으로서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배척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 계산상 5,042,739원이 되나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만큼 인용한다.